

제 117 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록)

거창군의회사무과

목 차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면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검토보고서 6 면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8
----------	--------

제출일자	2005. 2.
제출자	거창군수

<p><input type="checkbox"/> 개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p><input type="checkbox"/>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명을 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여 원활한 회의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위원회의 기능 중 당초에는 개별토지가격에 관한 사항만 심의 하던 것을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를 필요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로 제한하여 다른 위원 자격자들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p><input type="checkbox"/> 개정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로,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지가공시”를 “부동산 가격공시”로, 동항제2호중 “지가”를 “부동산가격”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중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제목중 “회의 및 의사”를 “회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부동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u>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③(생략)</p> <p>1. <u>지가공시</u> 또는 <u>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u></p> <p>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u>지가에 정통한 자</u></p> <p>3.(생략)</p> <p>제3조(위원장의 직무)</p> <p>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생략)</p>	<p>제1조(목적)-----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1조-----<u>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u></p> <p>-----</p> <p>-----</p> <p>제2조(구성) ①~③(현행과 같음)</p> <p>1. <u>부동산 가격공시</u>-----</p> <p>-----</p> <p>-----</p> <p>2. -----</p> <p>-----</p> <p>-----</p> <p>-----<u>부동산가격</u>-----</p> <p>3.(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장의 직무)</p> <p>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u></p> <p>②(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신 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3.(생략)</p>	<p>제4조(기능) ----- -----.</p> <p>1.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p> <p>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p> <p>3.(현행과 같음)</p>
<p>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임기)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7조(회의 및 의사)</p> <p>①~④(생략)</p>	<p>제7조(회의)</p> <p>①~④(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p> <p>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p>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부동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05.3.29

'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검 토 보 고 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신축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3차)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3. 1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3. 17
- 라. 의안번호 : 제2005 - 5호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생활쓰레기의 성상변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매립장의 사용기한이 상당기간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매립방식에서 소각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89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다.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구분	소재지	물건	수량 (㎡)	예정금액 (백만원)	비고
취득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 일원	건물 (소각시설)	991 (1식)	7,000	국비 2,100 군비 4,900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승인대상에서 제외, 소각시설은 열조합시설로 일30톤 처리규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한이 당초 2010년에서 2007년으로 단축될 것이 예상되고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여도 사용기한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소각처리방식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설설치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음.

○처리용량을 일30톤으로 설정한 것은 현재의 매립규모를 감안 환경부장관이 설정한 것으로 첨단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현 시설로는 소각 처리 하지 못하고 매립처리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소지가 있음.

※ 거창군 쓰레기매립장 반입 및 매립 현황

연도별	쓰레기 반입량 (일평균 /톤)	매립량 (일평균/톤)	비 고
2002	49.6	27.2	반입량중 일부는 재활용 또는 소각(5톤/일)
2003	45.7	26.8	
2004	45.0	26.0	

○동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 추진하려는 것임.

<장·단점>

- 성공확보시 사업비를 주므로 지자체 실패부담 감소
- 관련기술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여 최고의 기술선정 가능
-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이 어려움
- 한정된 기술방식으로의 제한은 불가하며, 심의시 공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양한 토목, 건축공사 발주에 적용 가능하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성공불제시행 국내 시행사례가 없음.

※기 설치한 지자체의 소각시설은 건설기술공모 제안 입찰 방식 채택 시행

○기설치한 지자체에서 소각로시설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우리 군에서 모험을 강행하면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한 사유와 소각로 설치후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성공불제 추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국고지원 조건중 소각처리 목표율 달성 또는 정책변경 등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등 부득이한 때에는 국고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소각시설 준공후 경제성 평가까지는 1~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고보조에 문제점 발생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04년 국고지원(630백만원)이 이미 이루어져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로서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추진함에 따라 계속비사업 승인 또는 반납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대상부지는 폐기물처리 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시설설치에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2000·10·20, 2002·11·29>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5·29>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5.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11>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1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신기술의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운전 등을 통하여 이의 성공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